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040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0401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543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이기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남대원

변론종결 2024. 2. 6.

판결선고 2024. 3.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5435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체결된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9,491,2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체결된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107,4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나.항과 같다(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표 내부 제2행의 “진행”을 “진행”으로, 제3면 하단 표 내부 제3행의 “포트프린팅”을 “포토프린팅”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20. 5. 28.”을 “2020. 5. 26.”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시”로 각 고쳐 쓰고,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송금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C가 2016. 5. 29.부터 2020. 5. 26.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송금액 전액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그중 일부 생활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양의무의 이행 또는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이체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다투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2008. 12. 1.부터 2011. 12.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022,276,175원을 편취하였으므로{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 1. 가.의 2)항 참조}, 원고는 늦어도 2011. 12. 28.경부터는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C는 2019년경 원고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 후에도 2020. 6. 24.를 기준으로 679,310,639원 이상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 1. 가.의 3)항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기간 내내 C에 대하여 적어도 위 679,310,639원 이상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9,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기간 동안에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외에도 D카드, E은행, F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국내에 아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C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5. 29.부터 2020. 5.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415,107,417원을 송금하였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서 그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먼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이체된 돈 중 별지 2. 목록 ‘생활비합계’란 각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총 195,616,121원)은 C가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을 제12, 13, 14, 19, 20,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약 4년에 걸쳐 매월 돈을 꾸준히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중에는 500,000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이체도 종종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입금된 돈은 전기가스요금, 통신료 등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에 상당한 정도 사용된 점, ③ C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목적으로 1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였고, C의 처인 피고는 별다른 직업 없이 국내에서 자녀 G와 H를 양육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여 적지 않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기는 했지만, 2012년경부터 시작한 새로운 사업(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4D 라이더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늦어도 2015년경부터는 수익이 발생하였고, C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돈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4D 라이더 사업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진행한 것이었기에, 사업수익이 발생한 후 C는 2015.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고에게 약 30회에 걸쳐 총 231,500,000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송금한 돈 중에는 C가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송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반면 피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오히려 피고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적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기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에게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인 점,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에 C는 4D 라이더 사업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중 피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은 C 및 자녀들과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자녀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할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C의 기본적인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15년경부터는 사업소득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고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상당한 부채가 있었던 점, 그동안의 지출 규모로 짐작되는 피고의 생활 수준, 생활비 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자녀들인 G, H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이체된 돈 중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생활비로 이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 스스로 월별로 정리하여 예비적 주장으로 공제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생활비합계’란 각 기재 금액으로서 총 195,616,121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별지 2. 목록 ‘생활비합계’란 각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총 219,491,296원(= 415,107,417원 - 195,616,121원))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C가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부채를 단기간에 상환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매월 이체된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중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음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실제 송금행위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달 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같은 달 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이체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월별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돈을 이체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의 C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일부를 증여로 본다는 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설령 피고의 변제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송금 당시 이미 C가 사업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5호증 참조)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변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통모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및 시기,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 그 송금의 액수와 시기, C와 피고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 합계 219,491,2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채무에 관하여 문자를 보낸 2019. 12.경에야 비로소 원고와 C 사이의 채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 이전에 있었던 증여에 관하여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C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미 2010년경부터 C가 원고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실패를 거듭하여 원고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적지 않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판사 유동균

별지